

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107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여성고용정책과), 044-202-7547

I.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

"아래의 소득금액"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가.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: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, 월평균보수가 1,333,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,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.

나.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: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

다.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

: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총족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